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 마리보건지소, 모전보건진료소)

의안 번호	2008-
----------	-------

제출년월일 : 2008. 11.
제안자 : 거창군수

1. 사유

- 거창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14,000톤/일이나, 현재 일 평균 하수유입량은 20,000톤/일 으로서 용량초과와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향후, 수요증대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 기초시설을 증설.
- 건물의 협소 및 노후로 벽면균열과 누수가 발생, 이전신축이 시급하여 주차공간 및 진료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취득재산의 표시

① 매입(부지)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 지목	면적	공시지가/ 사업비	비고
계				14,624	86,441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	토지	거창읍 양평리 289-1외 5필지	토지 (전2,과3, 임1)	12,963	39,621	상하수도사업소
마리보건 지소	토지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전	661	36,220	보건소
모전보건 진료소	토지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답	1,000	10,600	

② 신축(건물)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수량	사업비	비고
취득 (신축)	건물	계		485	948,500	보건소 (마리보건지소, 모전보건진료소)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 외 4필지	건물	336	598,000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	149 (1,000)	350,500	

3. 처분재산의 표시 : 해당없음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5. 전경사진 및 지적도 ⇨ “따로 붙임”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목록

회 계 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필지	15,109	1,034,941				
1	토지	거창읍 양평리 289-1	962	8,465	2009	하수처리장 증설	장석남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
2	“	거창읍 양평리 294	1,819	16,007	2009	“	손창호	
3	“	거창읍 양평리 295	926	8,158	2009	“	이석례	
4	“	거창읍 양평리 296-6	180	1,650	2009	“	신우원	
5	“	거창읍 양평리산160-9	7,454	4,427	2009	“	신상규	
6	“	거창읍 양평리산160-10	1,622	914	2009	“	최동식	
7	건물	마리면 말흘리 215-3외 4	336	598,000	2009	보건지소 이전신축	거창군	마리보건지소
8	토지	마리면 말흘리 215-3	184	12,898	2009	“	오철환	
9	“	마리면 말흘리 217-22	111	3,074	2009	“	오동근	
10	“	마리면 말흘리 12-2	66	1,828	2009	“	“	
11	“	마리면 말흘리 217-11	300	18,420	2009	“	“	
12	건물	위천면 모동리 738-5	149	350,500	2009	보건 진료소 이전신축	거창군	모전보건 진료소
13	토지	“	1,000	10,600	2009	“	강신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신축)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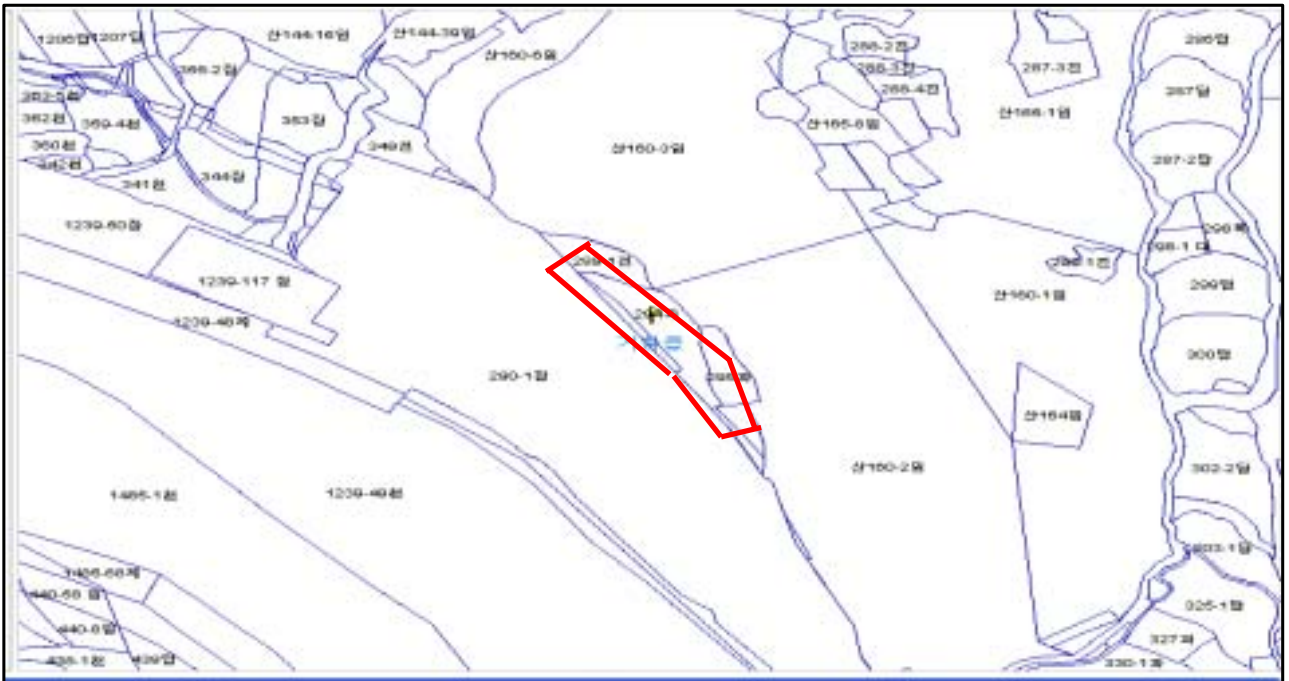
회 계 명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계			485	948,500				
1	건물	마리면 말흘리 215-3외 4	336	598,000	2009	보건지소 이전신축	거창군	
3	“	위천면 모동리 738-5	149	350,500	2009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	부재,000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거창읍 양평리 294번지 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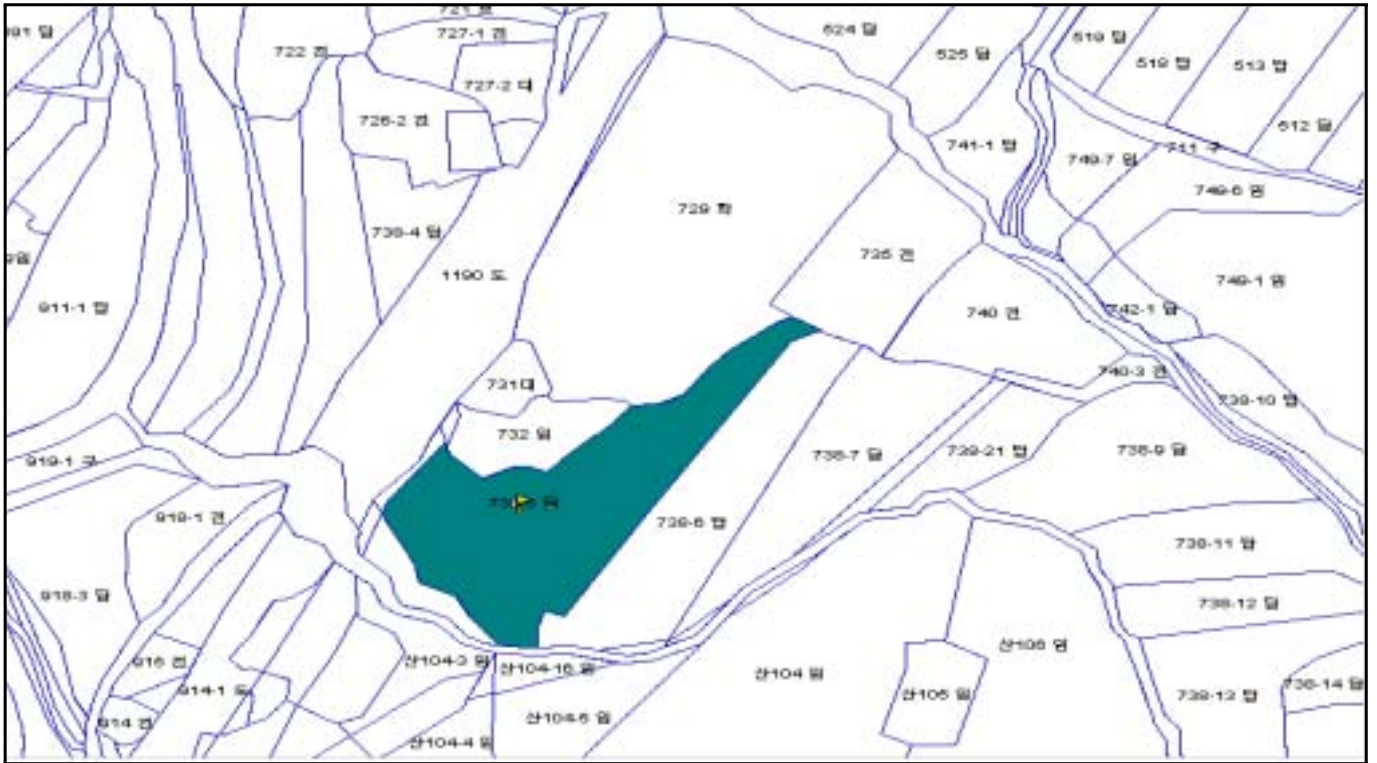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마리면 말흘리 215-3번지의외 4필지



지적도 및 전경사진

□ 토지소재지 : 위천면 모동리 738-5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인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